

홍콩 비관세장벽 이슈

Hongkong Non Tariff Barriers Issue

홍콩, 2023년 6월 1일부터 진균독소 3종 및 유해물질 5종의 강화된 최대 함량 기준 발효



식품 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 2단계로 시행
2023년 6월 1일부터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2021年食物內有害物質(修訂)規例)》의
(*)진균독소 3종(아플라톡신, 데옥시니발레놀, 파툴린)과 기타 유해물질 5종(벤조피렌,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테르, 멜라민, 3-MPCD, 에루스산)의 최대 함량 기준을 강화한 조항이 발효됨

(*)진균독소 :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

- 1) **배경** : 홍콩 정부는 2021년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곰팡이 독소, 산업 공정 과정에서 생산되는 트랜스지방 등 식품 내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를 발표하고,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고 밝힘. **이번에 시행되는 조항은 '식품 중 유해물질의 최대 함량 기준'에 대한 부분이며, (*)부분경화유의 식용 사용 금지, 부분경화유 함유 식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 경화유 함유 식품의 성분표 표기사항 등 부분경화유와 관련된 개정 조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

(*) 부분경화유 : 액체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한 유지

- 2)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 식품 중 유해물질 최대 함량 기준 **(2023년 6월 1일 발효)**

* 주로 식용 유지와 영유아용 조제 식품, 조미료에 대한 규제 사항임

- 식품 중 진균독소 최대 함량 기준

물질명	대상 식품	최대 함량 기준
아플라톡신 B1	유아용 조제유 또는 후속 영유아용 조제유 (유단백으로 만든 조제유 제외)	식품 1kg당 0.1µg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 (유단백으로 만든 영유아용 조제 분유 제외)	식품 1kg당 0.1µg
아플라톡신 M1	12개월 미만의 영아 및 영유아용 조제유	식품 1kg당 0.025µg
	기타 우유 및 분유	식품 1kg당 0.5µg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B2, G1, G2의 합)	반조리 아몬드, 브라질너트, 헤이즐넛, 땅콩, 피스타치오	식품 1kg당 15µg
	반조리 땅콩 제품 및 아몬드, 브라질너트,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제품	식품 1kg당 15µg
	향신료	식품 1kg당 15µg
	기타 식품	식품 1kg당 15µg
데옥시니발레놀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곡물 기반 식품	식품 1kg당 200µg
파툴린	사과 주스 또는 사과 주스를 첨가한 기타음료	식품 1kg당 50µg

- 식품 중 기타 유해물질 5종 최대 함량 기준

물질명	대상 식품	최대 함량 기준
벤조피렌	신선 혹은 미사용 식용유나 지방	식품 1kg당 5μg
	12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조제 분유	식품 1kg당 1μg
글리시딜지방산에스테르	12개월 미만 영유아용 분말 조제식 및 후속 영유아용 조제 분유	식품 1kg당 50μg
	12개월 미만 영유아용 액상 조제식 및 후속 영유아용 유동식	식품 1kg당 6μg
멜라민	12개월 미만 영유아용 액상 조제식 및 후속 영유아용 유동식	식품 1kg당 0.15mg
	우유 (12개월 미만 영유아용 액상 조제식 및 후속 영유아용 유동식 외)	식품 1kg당 1mg
	36개월 미만의 영아용 기타 식품	식품 1kg당 1mg
	임산부 또는 수유 중인 여성용 식품	식품 1kg당 1mg
	기타 음식	식품 1kg당 2.5mg
3-MCPD	산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고체 조미료	식품 1kg당 1mg
	산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한 기타 조미료	식품 1kg당 0.4mg
에루스산	카놀라유	지방산 중량의 2%
	기타 기름이나 지방, 또는 기름과 지방의 혼합물	지방산 중량의 5%
	기름이나 지방, 또는 두 가지가 혼합된 식품	식품 내 모든 지방산 중량합의 5%

3) 위반 시 조치사항 : 각 유해물질 별 최고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수입, 위탁, 납품, 제조를 엄격히 금지함

2023년 12월부터 부분경화유 규제 조항도 발효, 홍콩 수출 시 성분 검사에 유의해야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에는 WHO에서 발표한 식품 중 트랜스지방산 제거 목표에 따라 부분경화유의 식품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며, 이는 2023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 따라서 홍콩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개정 규례의 시행 일정과 규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출 식품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6월부터 발효되는 강화된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주로 식용 유지와 영유아용 조제 식품, 조미료에 대한 규제 사항임으로 해당 품목 수출 시 식품 내 성분 검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출처

홍콩식품 안전청, 《2021년 식품 중 유해물질(개정) 규례(2021年食物內有害物質(修訂)規例)》

홍콩 정부 공식 보도 사이트(info.gov.hk), 2021年食物內有害物質 (修訂) 規例 今日起分階段生效, 2023. 06. 01